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 및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공표 의무화〉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84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 및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공표 의무화	3

I. 개요

1.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8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기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1. 5.
- (3) 회 부 일 : 2025. 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시설 내에서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불법행위·부당행위 및 성폭력 범죄·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법인·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공표 여부의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일 행위의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청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인 법인·시설에 미리 통지하고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음.

이에 법인·시설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불법행위·부당행

위 및 성폭력범죄·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그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공표의 사전통지 및 소명·의견제출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삭제 및 제51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 및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공표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복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발생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공표대상자에게는 공표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 ⑤ (생략)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 도·감독·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 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u> ⑦ (생략) <u><신설></u>	⑦ (현행과 같음) <u>제51조의2(행정처분 등의 공표)</u>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1조에 따라 지도·감독·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반복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현행	개정안
	<u>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1조제6항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감독·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²⁾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대상 처분 현황³⁾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각각 1년에 623건 및 100여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 개정안은 법인·시설 내에서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불법 행위·부당행위와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공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일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경우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대상자에게는 공표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감독·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등을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3) p.9 참고자료 참고

□ 모든 처분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26조제1항 제6호·제6호의2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반복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⁴⁾에만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고,

해당 사유들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시설 및 법인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집단적으로 성폭력·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빼앗는 행위로서, 취약계층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해당 처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법적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불법행위’라는 표현을 현행법 조문의 표현⁵⁾과 같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불법행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생략)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5)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학대·성폭력범죄 및 반복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법인·시설에 한하여 그 처분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개정취지에 공감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중대 비위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의 공공성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향후 하위법령 마련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표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용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설폐쇄 이후 이용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개정안에서 입법 취지로 공공성·투명성 등의 확보를 표명하고 있으나, 헌법 원칙과 행정법 체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공표의무화에 따른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위반 우려, ‘중대하고 반복적인 행위’의 개념 불명확성 문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역설적 효과) 등이 문제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최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대상 처분 현황
-------------	------------------------------------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대상 처분 현황(2022~2024년)

	처분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처분)				처분사유 (시설폐쇄의 경우에만)
광역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2항 각호별 건수
서울	128	138	2	33	제3호(27건), 제4호(3건), 9호(4건),
부산	34	62	2	58	제1호(1건), 제3호(56건), 제4호(1건)
대구	35	51	0	1	제4호(1건)
인천	50	89	3	22	제3호(23건), 제4호(1건), 제5호(1건)
광주	34	28	0	0	
대전	30	40	0	3	제4호(3건)
울산	9	23	0	3	제3호(3건)
세종	8	5	0	8	제3호(8건)
경기	86	238	4	29	제1호(3건), 제3호(20건), 제4호(4건), 제8호(1건), 제9호(1건)
강원	97	10	3	6	제3호(4건), 제9호(2건)
충북	32	31	1	12	제1호(1건), 제3호(10건), 제4호(1건)
충남	16	2	0	0	
전북	23	87	0	5	제3호(2건), 제4호(1건), 제9호(2건)
전남	32	60	1	8	제3호(7건), 제9호(1건)
경북	11	0	0	2	9호(2건)
경남	31	90	1	21	제1호(2건), 제3호(19건)
제주	14	4	1	12	제1호(1건), 제3호(9건), 제4호(2건)
총계	670	958	18	223	

□ 최근 5년간 사회복지법인 대상 처분 현황(2020년 ~ 2025년 6월)

처분건수(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6조)				
광역시	임원의 시정요구 (제22조 제2항)	임원의 해임명령 (제22조 제1항)	시정명령 (제26조 제1항)	설립허가 취소 (제26조 제1항·제2항)
서울	-	3	9	1
부산	-	3	63	-
대구	-	-	-	1
인천	-	-	3	1
광주	-	-	15	-
대전	-	2	16	-
울산	-	-	28	-
세종	-	-	-	-
경기	-	1	100	1
강원	-	-	11	1
충북	-	1	1	3
충남	-	-	124	3
전북	-	-	89	1
전남	-	-	-	-
경북	1	-	15	1
경남	-	-	7	-
제주	-	-	2	2
총계	1	10	483	15